세정사례

– 통영안정공단 LNG생산기지 중심으로 –

LNG 공급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

- 경상남도 세정과 -

Ⅰ. 문제제기

1. 연구목적

지방자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필요한 자치재정권이 얼마만큼 확보되는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자치재원은 주민의 복지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추진의 성공여부와 직결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규모의 영세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의 부적정, 지나친 비과세·감면규정의 확대 등으로 대부분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신세원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조세체계로 볼 때,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시간을 두고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며 우선, 각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한 신세원의 발굴이 더 절실하다 하겠다.

이러한 세원발굴은 수익자 부담원칙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기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와 공공재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세원을 지방세로 발굴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통영 안정 국가산업 단지내 LNG(액화천연가스)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통영, 평택, 인천의 LNG 생산

기지의 LNG공급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방안과 필요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과 혐오시설 등이 지방세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원확충방안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역개발세의 개념과 실태

가. 지역개발세의 개념

지방세는 세원이 재산과세나 거래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및 경제규모가 확대됨에도 신장성이 높지 못한 경직성을 지니고 있어 지출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목적세와 보통세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개발세(지방세법 제253조)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과세대상으로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방법은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지만 도 조례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의 개발 또는 제반여건을 토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시켜 지역사회 개발에 재투자하는 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볼 때, 통영안정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LNG 생산기지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비용을 개발수익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범위에 LNG 생산기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지역개발세의 현실태

지역개발세는 지방세의 여러 세목 중에서 지역의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목적세이나 전체 지방세 중에서 지역개발세의 비중은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0.4%에 불과한 실정이며, 부과 부분도 〈표 2〉와 같이 부산광역시의 컨테이너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2006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 현황

(단위 : 억원)

세 목	부 과 액	점 유 율
합 계	420,020	100 %
취 득 세	79,100	18.8 %
등 록 세	80,022	19.1 %
면 허 세	810	0.2 %

세 목	부 과 액	점 유 율
레 저 세	6,878	1.6 %
지역개발세	1,750	0.4 %
공동시설세	5,415	1.3 %
지방교육세	44,567	10.6 %
주 민 세	66,819	15.9 %
재 산 세	32,258	7.7 %
자 동 차세	24,165	5.8 %
농업소득세	0	0.0 %
도 축 세	506	0.1 %
담배소비세	27,051	6.4 %
종합토지세	160	0.0 %
주 행 세	27,098	6.5 %
도시계획세	16,592	4.0 %
사 업 소세	6,829	1.6 %

※ 자료 : 2006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P37)

〈표 2〉 2006년 시·도별 지역개발세 부과 현황

(단위 : 억원)

시. 도 별	부 과 액	점 유 율
전 국	1,750	100 %
서 울	6	0.3 %
부 산	1,025	58.6 %
대 구	4	0.2 %
인 천	1	0.1 %
광 주	2	0.1 %
대 전	3	0.2 %
울 산	2	0.1 %
경 기	41	2.3 %
강 원	61	3.5 %
충 북	29	1.7 %
충 남	5	0.3 %
전 북	5	0.3 %
전 남	233	12.7 %
경 북	317	18.1 %
경 남	14	1.0 %
제 주	2	0.1 %

※ 자료 : 2007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P42)

이러한 요인은 현재 지방세법상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와 최근에 추가된 원자력발전에 한정되어 있어 세원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앞의 〈표 1-2〉와 같이 2006년도 전국의 지역개발세 부과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부과액이 1,750억원 중 부산광역시의 컨테이너 입출항의 지역개발세 923억원을 제외하면 827억원[1]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하나의 세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극히 저조한 실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해, 자연환경 훼손, 도로의 파손 및 혼잡, 위험시설의 입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 등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의 원인인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범위확대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Ⅱ. LNG의 특성과 수급현황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어야 할 통영의 LNG 생산기지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가스의 공급흐름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LNG의 특성

LNG는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라고 하며 저장과 운반하기 쉽도록 액화시킨 천연가스 즉, 메탄을 말한다.

LNG는 −162℃ 이하로 냉각하여 만들며, 가스 형태일 때보다 1/600 가량의 부피만을 차지하므로 쉽게 수송할 수 있고, 수송시 액체 상태로 운반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운반 할 수 있으며, 또한 대기압이나 이보다 약간 높은 압력에서 이중벽으로 만든 저온용기 안에 저장하는데 온도만 올려주면 가스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LNG는 천연 가스와 화학조성이 같기 때문에 특히 많은 양을 쓸 때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이나 프로판을 통칭)나 다른 액화 가스보다 훨씬 실용적이며, 용도는 가정·산업·발전용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LNG 생산증가를 가져왔으며 그간, 상업적 가치가 없어 불태워 버렸던 것을 이제는 천연 가스로 활용하게 되었다. 운송수단으로는 특수한 유조선을 이용하여 알제리, 보르네오,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유럽·일본·미국·우리나라 등으로 운송되며, 이렇게 운반된 LNG는 인천·평택·통영의 생산기지에 저장되었다가 생산기지의 지하배관(2,519㎞)를 통하여 전국으로 보급되는 실정이다.

1) 2005년도에는 179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6.1.1부터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에게도 과세함으로서 627억원이 증가하였다.

2. LNG 공급의 흐름도

LNG의 공급은 해외원산지 공정과 가스공사의 기화공정(도매단계), 도시가스사의 판매공정(소매단계)의 3단계로 구분된다.

가. 1단계 – 해외원산지 공정

LNG의 채취 및 정제를 거쳐 생산국 액화설비 시설을 통하여 선박 저장탱크의 선적 단계이다.

나. 2단계 – 가스공사의 기화 공정 (도매업)

선박에 선적된 LNG는 하역설비를 통하여 육상의 저장탱크에 옮겨진 후 증발가스압축기로 액화 처리를 거쳐 그린펌프를 통하여 기화 처리하는 단계 즉, 도매단계라 한다.

다. 3단계 – 도시가스사의 판매 공정(소매업)

전국의 가스공사배관망을 통하여 중간공급관리소(91개소)를 거쳐 발전소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매단계로 나누어진다.

현재 통영기지에서 생산되는 LNG는 국도 2호선 (목포~부산)도로의 지하관로를 통하여 남부지역으로, 평택은 중부지역으로, 인천은 수도권 지역으로 공급된다.

3. 통영의 LNG 저장 현황

통영안정공단의 LNG 생산기지 저장조의 현황과 최근 5년간의 LNG 도입량은 〈표 3〉과 같다.

〈표 3〉 LNG 특수저장조

구 분	대 수	준공일	저장용량 (배럴)	저장용량 (톤수)	비 고
합 계	10기		8,806,000	1,408,900	기당 140,890(톤) 현재 4기는 공사중임
1~2호	2기	2002년	1,761,200	281,780	
3~5호	3기	2004년	2,641,800	422,670	
6~10호	5기	2006년	4,403,000	704,450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webmaster@erik.re.kr)

또한, 통영지역 LNG 특수 저장조는 총 10기가 가동 중이고, 4기는 건설 중에 있으며, 향후 3기를 추가로 건설하여 2011년에는 17기의 저장조가 가동될 예정인데, 이는 평균 1기당 140,890~200,000톤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으며, 연도별 LNG 도입량은 〈표 4〉와 같다.

〈표 4〉 연도별 LNG 도입량

(단위 : 천톤)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9,696	1,208	3,342	4,726	4,837	5,584

※ 2006년도 선박입항 횟수 92회, 1회 평균 운송량은 61천톤임

최근 5년간의 통영기지로 입항한 LNG 도입량을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특수저장조가 연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도입량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통영의 LNG 시설의 국세와 지방세 현황

최근 5년간 LNG 수급에 대한 국세의 납부현황과 LNG 시설에 대한 지방세 납부 현황은 〈표 5〉, 〈표 6〉과 같다

〈표 5〉 LNG 수급에 대한 국세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세수합계	17,479	918	2,572	3,795	4,189	6,005
관 세	712	36	103	156	189	228
특별소비세	8,702	470	1,300	1,876	1,899	3,157
부가가치세	8,065	412	1,169	1,763	2,101	2,620

※ 자료 : 한국가스공사 각 기별 재무제표

〈표 6〉 LNG 저장시설에 대한 지방세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방세 (부가세포함)	6.78	0.08	0.6	0.6	1.2	4.3

※ 자료 : 통영시 연도별 지방세 부과자료 전산 발췌

〈표 5〉와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영생산기지의 LNG 수급에 대한 5년간 국세 납부현황과 LNG 특수저장조의 지방세 납부현황은 국세가 최근 5년간 LNG 공급에 대하여 1조 7,479억원을 납부한 반면, 지방세는 국가 및 지방공단의 입주업체에 대한 감면규정(지방세법 제276조)으로 재산세는 100%,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50%씩 각각 5년동안 감면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 납부액은 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향후 5년간의 감면 기한이 지나면 세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행 세법상 국가 및 지방공단에 입주하는 업체가 신·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지만,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감면과 관계없이 부과·징수하는데 이것도 불합리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하겠다.

Ⅲ. LNG 시설의 피해사례와 과세의 필요성

1. LNG 저장시설에 대한 피해사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는 발전시설, 송·변전시설, 석유비축기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과 함께 대표적인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의 입지지역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시키는 반면, 상대적인 편익은 타지역과 비교시 동일하거나 그다지 크지 않은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다. 특히 지난 2월7일 인천 LNG 생산기지 내 저장탱크 4기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여기서 LNG시설에 대한 외국의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외국의 LNG시설 피해 사례

년 도	국 가	피해내용	원 인
1944	미국 클리브랜드	128명사망	LNG 탱크화재
1973	미국 스테이텐 섬	40명사망	가스유출로 탱크폭발
1978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인명피해 없음	탱크기초 붕괴로 가스누출
1978	미국 텍사스	"	저장탱크 화재 폭발
1979	미국 코브포인트	1명사망	가스누출로 화재
2005	알제리	27명사망, 70명부상	LNG 시설폭발

※ 자료 :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 검색(미국가스사고조사 보고서 등)

이러한 사고는 운전조건과 안전요구, 기술과 재료선택, 건설과 검사기술 등의 발전이 이루어진 오늘날과는 다른 조건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LNG 시설에서는 언제든지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특히, 인천 LNG생산기지는 10만~14만톤의 대용량 저장탱크 18기가 가동 중이고 2기가 건설중인데 이는 인근 송도가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도시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므로 우려되는 바라 하겠다.

더구나, LNG에 대한 피해는 핵발전소에 버금가는 피해가 예상되나 이는 전문가들의 더 많은 연구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2. LNG 시설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필요성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의 경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인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LNG 생산기지에 대해 과세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스생산 기지의 입지는 LNG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선박으로 운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두 해양을 접하고 있다. 더구나, 선적한 LNG를 가스저장조에 하역할 때에는 배수관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생산기지 주변의 수자원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시키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건을 감안할 때 LNG 공급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LNG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특수부존자원으로 연간 100여회의 선박 입출항에 따른 선박사고가 우려된다.

둘째, LNG의 운반은 냉각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역시 수자원의 해수면 온도가 변화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산자원에 피해를 가져오므로 이를 보호하는데 재원이 필요하다.

특히, 통영의 LNG 생산기지 앞의 공유수면은 송유관의 해저관로 설치로 해수의 환경변화에 대한 어장피해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가스공사가 배출하는 냉·배수로 인해 주변 해역의 각종 어류와 동·식물성 프라크톤이 소멸되어 해역일대의 생태계가 파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며, 이곳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영세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2)]

셋째, LPG 생산기지는 테러분자 및 불순분자들로부터 폭발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만약 폭발될 경우 엄청난 위력을 내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2)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가동에 따른 피해보상용역조사 및 LNG 수입세 현지분배 특별법 촉구 건의문 채택(통영시의회 박정대의원 홈페이지)

있다. 지난 1995년 대구지하철공사 도시가스폭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보더라도 LNG 생산기지의 위험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통영에 들어 선 가스생산기지는 원전시설이나 방폐장에 버금가는 고위험시설이다. 그러나 특별법 등 지원을 위한 근거가 현재 없는 실정이다.[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NG 시설에 제반 위험요소 등을 근거로 지역개발세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더욱 연구하여 전문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와 많은 이해관계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등 많은 과제가 있다고 하겠다.

Ⅳ. LNG 공급에 대한 과세방안

앞에서 언급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LNG 생산기지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제시 및 예상세액을 추계 분석하였다.

1. 과세대상

과세대상 LNG는 공급배관을 통하여 각 지역의 공급관리소에 공급되는 기체로 변환된 판매용 공급 LNG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운송선에서 도입하여 단순히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액체상태의 LNG와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와 징수방법

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LNG 공급배관을 통하여 각 지역의 공급관리소 가스관(부득이 차량이나 선박 등의 저장시설을 이용하는것 포함)으로 공급하는 가스생산업자(또는 도매업자)로 한다.

나. 징수방법

현행 지역개발세의 징수방법, 납기, 가산세를 준용한다.

3) 통영신문 2007.9.20 주요기사면

3. 과세표준과 세율

가. LNG 공급에 대한 1㎥당 : 1원(기체상태)

※ 1톤을 ㎥로 환산할시 1톤 = 1,238㎥

나. 도 조례 규정에 의하여 표준세율 100분의 50 가감조정

다. 2007. 7. 1. 기준 각 시·도별 취사용 도시가스 1㎥당 가격

- 도매가격 : 557원(전국동일)
- 소매가격 : 최저 565원 ~ 673원으로 매분기별 책정(시·도별 상이)

※ 도시가스의 도매가격은 산업자원부에서 가격을 승인하며 소매가격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4. 납세지

LNG를 생산하여 각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리소로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한 시·도(인천, 경기, 경남)에서 부과한다.

Ⅴ. LNG 공급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수전망

통영·인천·평택의 가스공사에서 생산한 LNG의 생산량과 판매현황을 토대로 지역개발세 부과에 따른 세수전망을 〈표 9〉와 같이 추계할 수 있다.

1. 전국의 LNG 판매량

가스공사는 서울지사를 비롯하여 8개 지사를 두고 LNG의 압력조절, 계량, 공급 및 비상시 차단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사에서 관할하는 공급관리소는 9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가스공사 측에 의하면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재고량이 거의 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표 8〉 전국 LNG 판매현황

(단위 : 천톤)

용도 / 년도	도시가스용	발 전 용	합 계
2002년	11,194	6,509	17,703
2003년	11,978	6,468	18,446
2004년	12,504	8,818	21,322
2005년	14,032	8,821	22,853
2006년	13,957	9,542	23,499

※ 자료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현황(판매) http://www.kogas.or.kr

2. LNG 공급에 대한 세수전망

LNG 공급에 대해 〈표 9〉와 같이 1㎥당 1원(액체상태로 환산할 시 톤당 600원)으로 부과한다고 할 때 지역개발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년간 290억원으로 추계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세의 합리적인 과표 및 세율 산정은 가스공급 가액과 매출량 또는 도입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표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저렴한 가격과 열효율성이 좋은 도시가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으로 한다면 세수는 더 증가할 것이다.

〈표 9〉 LNG 지역개발세 부과에 대한 세수추계

(기준 : 2006년 판매량)

구 분	2006년 판매량(톤)	㎥환산시 (천㎥)	㎥당 세액	예상세액	비 고
전 국	23,499,000	29,091,762	1원	290억원	세수추계

※ 예상세액 : 23,499,000톤 × 1,238㎥ × 1원 = 29,091,762,000원

※ 2005년도 지역개발세 부과액은 1,101억원

〈표 10〉과 같이 전국의 LNG저장탱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통영·평택·인천 생산기지의 저장탱크는 총 38기가 가동 중이고 현재 저장탱크 19기가 건설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으며, 추가 4기지도 계획 중이다.

이에 반해 생산기지 주변은 저장탱크의 증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0〉 전국 LNG 저장탱크 현황

(기준 : 2007.1.1)

기지 \ 현황	가동 년도	면적	부두 설비	저장탱크 (가동중)	저장탱크 (신축중)
합 계	–	127만평	5식	4,880천톤(38기)	3,440천톤(19기)
통 영	2002	40만평	75천톤 선좌1식	14만톤(10기)	14만톤(2기) 20만톤(4기)
평 택	1986	43만평	75천톤 선좌2식	10만톤(10기)	14만톤(4기) 20만톤(7기)
인 천	1996	44만평	75천톤 선좌2식	10만톤(10기) 14만톤(2기) 20만톤(6기)	20만톤(2기)

※ 자료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현황(사업현황)

2006년 11월에 통영시의회에서는 LNG 통관시 부과하는 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국회 및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자 2007년 3월 8일 이윤성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스누출 및 저장탱크의 폭발위험에 따라 그해 4월에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산업자원부에 상정되었다가 저장탱크가 폭발할 가능성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가스공사 측과 산업자원부의 답변으로 법제화가 되지 못하였으나 인천 송도 가스누출 사건의 원인이 시공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음이 밝혀진 바가 있다. 따라서 이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제화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Ⅵ. 결 론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자주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신세원의 발굴은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LNG 공급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리적인 과표 산정 방식은 여러 가지 현상과 실태를 종합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다만, 앞에서 거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통영안정공단의 가스 생산시설의 국세수입에 비해 지방세의 세수는 전무하다 하겠으며 이것은 인천, 평택 등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LNG공급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부과한다면 2006년 기준으로 **연간 29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도시가스의 보급이 확대되고 기존의 시설을 추가 신설·증설하여 공급이 확대될 것이므로 안정적인 세원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LNG저장시설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원의 사용에 따른 수익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과 주변의 환경파괴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기인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치한 공장이나 혐오시설과 위험시설 등이 지방세수로 연계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재원의 확충이 지방자치의 생존여부에 달려있다 하겠으므로 앞으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의 소극적인 세수증대 방안과 신세원의 발굴, 탄력세율의 확대적용, 체납액 징수기법, 세외수입의 발굴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자립도를 달성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요구들을 단순히 집단 이기주의라고 인식하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적극 합심하여 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독단으로 새로운 세목을 늘리거나 신세원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 : 20 [4]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공장 및 위험시설 등을 유치하여 이를 세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자주재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의존재원을 줄여나감으로서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기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전문가의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중앙 부서와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설득력 있는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2001년도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조세배분은 약 80% : 20% 정도이나, 지방재정 조정수단인 이전 재원을 고려할 경우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간의 실질적인 배분은 45% : 55%로 나타나고 있다.

◀◀◀ 참고문헌 ▶▶▶

1. 2007 개정신판 지방세법 편람 P421(지역개발세)
2. 2006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P37, P40
3. 한국가스건설산업연구원(webmaster@erik.re.kr)
4. 한국가스공사 각 기별 재무제표(http://www.kogas.or.kr)
5.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 검색(미국가스사고조사 보고서 등)
6. 통영시의회 박정대의원 홈페이지
7. 통영시문 2007.9.20 주요기사 1면
   - LNG기지 주변 지원법 제정 시급하다.
8. 대체에너지 i-Power(http://www.ipdwerfc.com)
9.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현황(사업현황)
10. 통영시 동향보고(통영시 세무과-12721, 2006.9.12)
    -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가동에 따른 피해보상용역조사 및 LNG 수입세 현지분배특별법 제정촉구 건의문
11. 산업경제연구 2003년 2월호 P160